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44 발의연월일: 2022. 8. 2.

발 의 자:신정훈·김승남·김정호

서영교・유정주・윤재갑

이상헌 · 이성만 · 이학영

전용기 · 홍정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

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 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변경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변경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 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 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 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 사항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안 제47조).

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 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 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
 ·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청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
 자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
무 등) ① ~ ③ (생	략)		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
			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
			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
			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
			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u>한다.</u>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
			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
			를 받거나 변경 등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
			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 .	관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
리) ① (생 략)			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후 단신설>

③ (생 략)

제47조(벌칙) ① <u>거짓이나 그 밖</u> 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 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②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u>을 기 썼기:</u>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u>.</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u>사업자</u>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다.

- 1. (생략)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신 설>

<u>1. · 2.</u> (생 략)

②·③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7조를 위반하여 환경책임 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 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 록 · 신청에 적합하도록 변경 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9조(과태료) ① -----

-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 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 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 여 제출한 사업자
-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